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7
----------	-----

2024. 4.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구청장(자원순환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청소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며,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규격봉투 50 l 이상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무게 및 밀도 제한
- 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제외 물품에 가정용 연탄재 명시
- 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비닐류의 배출방법 명시
- 라. 종량제봉투 판매 이윤을 9%로 상향 조정
- 마. 특수규격봉투 50 l 규격 삭제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효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효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효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별표1

##### 사. 합성수지비닐류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

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가족정책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가. 생활폐기물 배출시 무게 등 제한(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생 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l 이상의 규격 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1. 50l: 13kg 이하 2. 75l: 19kg 이하 3. 배출밀도: 0.25kg/l 이하

- 집행부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위와 같이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무게 규제를 설정한 법적 이유는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sup>1)</sup>를 반영함에 따른 것인 바, 상위 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나. 규격봉투 및 일반규격봉투 가격 조정(별표 3)

- 종량제 봉투의 판매 이윤을 현행 공급가격의 7%에서 공급가격의 9%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겠음.

#### 다. 50L 종량제 봉투 삭제(별표3 및 별표4)

- 집행부는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종량제봉투’ 50L를 제작하지 않기 위해 별표에서 해당 봉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나 마대 등에 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겠음.

1)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라. 이물질 오염된 비닐류 배출방법 명시(별표2)

- 음식물 등에 오염된 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담을 경우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운반되어 소각처리되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서 이물질로 오염된 비닐류는 폐합성수지류 소각업자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 등에 담도록 배출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겠음.

## 마. 결론

- 금번 개정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명시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종량제 봉투 판매 이윤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질 의 : 종량제봉투 사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마진 부족에 따른 판매 기피인 듯함. 이번 개정에 판매이윤 9%로 조례 개정이 충분한가
- 답 변 : 현실적으로는 9%도 부족함. 환경부 관련 지침 하한가로 9%로 개정안 제출하였으나, 의원님들 협조에 따라 10%로 수정 필요

## 7. 토론 요지

-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현실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수치를 일부 수정하고, 조례 시행 상의 애매함을 막기 위하여 시행 날짜를 부칙에 규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57호

발의일자 : 2024. 4. 2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 시행 상 애매함을 없애기 위하여, 부칙에 시행 날짜를 명확히 규정함
- 현실에 적합하도록 별표의 수치를 일부 수정함

## 2. 수정내용

- 조례 시행 상 애매함을 없애기 위하여, 부칙에 시행 날짜를 명확히 규정함(부칙)
- 현실에 적합하도록 별표의 수치를 일부 수정함(별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 ℓ		130		
10 ℓ	250	250		
20 ℓ	490	490	520	
30 ℓ		740	780	
50 ℓ		1,250	1,330	
75 ℓ			2,000	
100 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 ℓ	20 ℓ	
가 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생략)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u>직접</u>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u></p> <p>1. <u>50ℓ : 13kg 이하</u>  2. <u>75ℓ : 19kg 이하</u>  3. <u>배출밀도: 0.25kg/ℓ 이하</u></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직접</u> 구입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30%;">품목</th> <th style="width: 6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비닐류</td> <td>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30%;">품목</th> <th style="width: 6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비닐류</td> <td>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p>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u> <u>일반규격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재사용</th> <th>가정용</th> <th>영업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5ℓ</td><td></td><td>130</td><td></td><td></td></tr> <tr><td>10ℓ</td><td>250</td><td>250</td><td></td><td></td></tr> <tr><td>20ℓ</td><td>490</td><td>490</td><td>520</td><td></td></tr> <tr><td>30ℓ</td><td></td><td>740</td><td>780</td><td></td></tr> <tr><td>50ℓ</td><td></td><td>1,200</td><td>1,330</td><td></td></tr> <tr><td>75ℓ</td><td></td><td></td><td>2,000</td><td></td></tr> <tr><td>100ℓ</td><td></td><td></td><td></td><td></td></tr> <tr><td>판매이윤</td><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7%</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도</th> <th colspan="3">일반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용량</td> <td>10ℓ</td> <td>20ℓ</td> <td>50ℓ</td> <td></td> </tr> <tr> <td>가격</td> <td>410</td> <td>640</td> <td>1,400</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7%</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50ℓ		가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u> <u>일반규격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재사용</th> <th>가정용</th> <th>영업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5ℓ</td><td></td><td>130</td><td></td><td></td></tr> <tr><td>10ℓ</td><td>250</td><td>250</td><td></td><td></td></tr> <tr><td>20ℓ</td><td>490</td><td>490</td><td>520</td><td></td></tr> <tr><td>30ℓ</td><td></td><td>740</td><td>780</td><td></td></tr> <tr><td>50ℓ</td><td></td><td>1,200</td><td>1,330</td><td></td></tr> <tr><td>75ℓ</td><td></td><td></td><td>2,000</td><td></td></tr> <tr><td>100ℓ</td><td></td><td></td><td></td><td></td></tr> <tr><td>판매이윤</td><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9%</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도</th> <th colspan="2">일반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용량</td> <td>10ℓ</td> <td>20ℓ</td> <td></td> </tr> <tr> <td>가격</td> <td>410</td> <td>640</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9%</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가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u> <u>일반규격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재사용</th> <th>가정용</th> <th>영업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5ℓ</td><td></td><td>130</td><td></td><td></td></tr> <tr><td>10ℓ</td><td>250</td><td>250</td><td></td><td></td></tr> <tr><td>20ℓ</td><td>490</td><td>490</td><td>520</td><td></td></tr> <tr><td>30ℓ</td><td></td><td>740</td><td>780</td><td></td></tr> <tr><td>50ℓ</td><td></td><td>1,200</td><td>1,330</td><td></td></tr> <tr><td>75ℓ</td><td></td><td></td><td>2,000</td><td></td></tr> <tr><td>100ℓ</td><td></td><td></td><td></td><td></td></tr> <tr><td>판매이윤</td><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10%</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도</th> <th colspan="2">일반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용량</td> <td>10ℓ</td> <td>20ℓ</td> <td></td> </tr> <tr> <td>가격</td> <td>410</td> <td>640</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급가격의 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가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50ℓ																																																																																																																																																																																										
가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가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0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용도	일반용		비고																																																																																																																																																																																										
용량	10ℓ	20ℓ																																																																																																																																																																																											
가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 18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206 603 779 946"> <thead> <tr> <th>용량</th> <th>용도</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가정용</td> </tr> <tr> <td>10ℓ</td> <td>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td> </tr> <tr> <td>20ℓ</td> <td>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td> </tr> <tr> <td>30ℓ</td> <td>가정용, 영업용</td> </tr> <tr> <td>50ℓ</td> <td>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td> </tr> <tr> <td>75ℓ</td> <td>영업용</td> </tr> <tr> <td>100ℓ</td> <td>공공용</td> </tr> </tbody> </table>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p>[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 18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71 603 1444 946"> <thead> <tr> <th>용량</th> <th>용도</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가정용</td> </tr> <tr> <td>10ℓ</td> <td>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td> </tr> <tr> <td>20ℓ</td> <td>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td> </tr> <tr> <td>30ℓ</td> <td>가정용, 영업용</td> </tr> <tr> <td>50ℓ</td> <td>가정용, 영업용, 공공용</td> </tr> <tr> <td>75ℓ</td> <td>영업용</td> </tr> <tr> <td>100ℓ</td> <td>공공용</td> </tr> </tbody> </table>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p>[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 18조제2호 관련)  (개정안과 같음)</p>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연탄재”를 “가정용 연탄재”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ℓ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1. 50ℓ : 13kg 이하
2. 75ℓ : 19kg 이하
3. 배출밀도: 0.25kg/ℓ 이하

제21조제3항 중 “직접구입”을 “직접 구입하여”로 한다.

별표 2의 비닐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50ℓ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 ℓ		130		
10 ℓ	250	250		
20 ℓ	490	490	520	
30 ℓ		740	780	
50 ℓ		1,250	1,330	
75 ℓ			2,000	
100 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 ℓ	20 ℓ	
가 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u>다만</u>,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p> <p>② (생 략)</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5조(종량제 실시) ① ----- ----- ----- ----- . <u>다만, 가정용</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 l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u></p> <p><u>1. 50 l : 13kg 이하</u></p> <p><u>2. 75 l : 19kg 이하</u></p> <p><u>3. 배출밀도: 0.25kg/l 이하</u></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생 략)</p> <p>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u>직접구입</u>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직접 구</u> <u>입하여</u> ----- .</p>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20%;">품목</th> <th style="width: 7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비닐류</td> <td>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20%;">품목</th> <th style="width: 7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비닐류</td> <td>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종류	품목	배출요령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도	일반용			비 고
	용량	10ℓ	20ℓ	
가 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8조제2호 관련)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도	일반용		비 고
	용량	10ℓ	
가 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10%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8조제2호 관련)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7
----------	-----

제출연월일: 2024. 4. 12.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자원순환과

## 1. 제안이유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청소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며,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격봉투 50ℓ 이상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무게 및 밀도 제한
- 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제외 물품에 가정용 연탄재 명시
- 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비닐류의 배출방법 명시
- 라. 종량제봉투 판매 이윤을 9%로 상향 조정
- 마. 특수규격봉투 50ℓ 규격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 주민부담을 산정기준 제시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효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효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효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별표1

사. 합성수지비닐류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연탄재”를 “가정용 연탄재”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ℓ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의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1. 50ℓ : 13kg 이하
2. 75ℓ : 19kg 이하
3. 배출밀도: 0.25kg/ℓ 이하

제21조제3항 중 “직접구입”을 “직접 구입하여”로 한다.

별표 2의 비닐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50ℓ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 ℓ		130		
10 ℓ	250	250		
20 ℓ	490	490	520	
30 ℓ		740	780	
50 ℓ		1,250	1,330	
75 ℓ			2,000	
100 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 ℓ	20 ℓ	
가 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 폐기물은 제외한다.</p> <p>② (생 략)</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생 략)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u>직접구입</u>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5조(종량제 실시) ① ----- ----- ----- ----- --- <u>가정용 연탄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ℓ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u></p> <p>1. <u>50ℓ: 13kg 이하</u> 2. <u>75ℓ: 19kg 이하</u> 3. <u>배출밀도: 0.25kg/ℓ 이하</u></p> <p>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직접 구입하여</u> -----.</p>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 류</th> <th style="width: 30%;">품   목</th> <th style="width: 60%;">배 출 요 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 비닐 류</td> <td style="vertical-align: top;">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8. 비닐 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 류</th> <th style="width: 30%;">품   목</th> <th style="width: 60%;">배 출 요 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 비닐 류</td> <td style="vertical-align: top;">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8. 비닐 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8. 비닐 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8. 비닐 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li> </ul>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도	일반용			비고
	10ℓ	20ℓ	50ℓ	
용량	10ℓ	20ℓ	50ℓ	
가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8조제2호 관련)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도	일반용		비고
	10ℓ	20ℓ	
용량	10ℓ	20ℓ	
가격	410	64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9%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8조제2호 관련)

용량	용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 비 용 추 계 서

## I . 비 용 추 계 요 약

1. 비용발생 요인: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3의 종량제봉투 판매이윤률을 기존 7%에서 9%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우리구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은 판매가격에서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판매가격은 현행을 유지하고 봉투 판매소의 이윤만 2% 증가시킬 경우 판매수입은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세입	○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73,500,000
	○							
	소계(a)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73,500,000
세출	○							
	○							
	소계(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73,5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 年)	2차연도 (20 年)	3차연도 (20 年)	4차연도 (20 年)	5차연도 (20 年)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서는 단순 예측이므로 실제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 또는 감소, 판매가격의 변화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세입은 변동 가능함

6.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8급 김보영 (02-3423-5974)

## Ⅱ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징수전망

- 현재 월 평균 1,250,000천원 수입발생
- 조례개정 이후 월 평균 1,225,000천원 수입 발생 예상

### ○ 비용추계 산출내역

- 1,225,000천원 × 12월 = 14,700,000천원